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03

발의연월일: 2025. 6. 11.

발 의 자:전진숙·서영석·강선우

김선민 • 박희승 • 김문수

서미화 · 임호선 · 이수진

김정호 · 이인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됨에 따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 관 련 규제 완화,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으나 현행 「의료법」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확산 방지 외에도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 를 적극 활용하여 의료공급 취약지역 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 가 있음.

이에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 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진찰"을 "진찰(제34조의2에 따른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2에서 같다)"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34조의2" 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원격의료)"를 "(비대면 협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을 "비대면 협진(이하 "비대면 협진"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원격의료를"을 각각 "비대면 협진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원격의료"를 "비대면 협진"으로 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비대면 진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 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 의 진료(이하"비대면 진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지속적 관찰
- 2. 상담 · 교육

- 3. 진단 및 처방
- ② 비대면 진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1. 의료기관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섬· 벽지(僻地), 응급의료취약지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 등으로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
- 3.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대리수령자에 의한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 환자
- 4.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 중인 사람으로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
- 5.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 환자
- 7. 해당 의료인에게 이미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를 받은 자
- 8. 그 밖에 휴일·야간 진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 진료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 ③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은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褥瘡) 관찰,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비대면 진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⑤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비율을 초과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을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비대면 진료를 행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 3. 의료인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에 비대면 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수 있도록 적정 처방일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비대면 진료의

실시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비대면 진료 중개) ① 제34조의2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비대면 진료 요청의 확인, 비대면 진료의 실시,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전달 등을 위하여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이하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자(이하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 제공·운영 기준을 따라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가 제공하는 기능의 적 정성 및 우수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할 수 있다.
- 제34조의4(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의무사항 등) ①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한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는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를 제공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의료인의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는 행위
 - 2.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 3. 「의료법」,「약사법」,「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보건의료인, 의료기관, 약국 및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하는 행위
- 4. 그 밖에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거나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
- ②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는 「약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특정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의료기관등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 2. 환자·환자보호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한 의료기관, 약국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 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의료기관등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34조제2항"을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4항·제5항"으로, "때 또는"을 "때,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가 제34조의3제3항 및 제34조의4를 위반한 때 또는"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제10항"을 "제10항, 제34조의2제4항 · 제5

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 를 한 경우
- 2. 제34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는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비대면 진료 중개업을 하지 못한다.

제68조 중 "제64조제1항"을 "제64조제1항 · 제4항"으로 한다.

제88조제1호 본문 중 "제33조제4항"을 "제33조제4항, 제34조의4"로,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제17조(진단서 등) ①
종사하고 직접 <u>진찰</u> 하거나 검	진찰(제34조의 <u>2</u>
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	에 따른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	<u>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2에</u>
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u>서 같다)</u>
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	
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	
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	
속 • 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	
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로서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	
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	
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	
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	
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	
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	
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	
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 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 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17조의2(처방전)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 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 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

	-
	_
	_
	_
	_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처방전) ① (현행과 길	Ļ
<u> </u>	
②	_
	_
	-
	-
	-
	-
	-
	-
	_
	_
o`	ì
	L
<u>조 및 제34조의2</u>	-

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 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 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 령할 수 있다.

- 1. · 2. (생략)
- ③ (생략)
-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 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 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 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 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u>원격의료를</u> 행하거나 받으 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야 한다.
 - ③ <u>원격의료를</u>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 와 같은 책임을 진다.
 - ④ 원격지의사의 <u>원격의료</u>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	· 2. (현호 (현행과 조 <u>(비대</u> 면	행과 같 같음)	습)	
	 <u>비대면</u> 진"이라	협진		비대면
	<u>비대면</u> <u>비대면</u>			

(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 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신 설>

제34조의2(비대면 진료) ① 의료 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3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진료 (이하 "비대면 진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지속적 관찰
- 2. 상담 · 교육
- 3. 진단 및 처방
- ② 비대면 진료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 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1. 의료기관까지의 거리를 고려 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섬·벽지(僻地), 응급의료 취약지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관한 기본법」에 따른 현역에본무 중인 군인 등으로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
- 3.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대리수령자에 의한 처방전 수령이가능한 환자
- 4.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선박에 승선 중인 사 람으로서 의료기관 방문이 어 려운 환자
- 5.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 환자
- 7. 해당 의료인에게 이미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기간 내에 1회 이 상 대면하여 진료를 받은 자

- 8. 그 밖에 휴일·야간 진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 진 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 <u>자</u>
- ③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은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褥瘡) 관찰,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지속적인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비대면 진료를 하려는 의료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과 장비 를 갖추어야 한다.
- ⑤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비율을 초과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을 비대면 진료만 하는의료기관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비대면 진료를 행하는 의료 인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

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한 경우
- 2.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경우
- 3. 의료인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 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에 비대면 진료를 행한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 처방일 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의료 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 <u>8</u>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 정에서 정한 것 외에 비대면

<신 설>

진료의 실시 및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렁으로 정한다.

제34조의3(비대면 진료 중개) ①
제34조의2에 따라 비대면 진료
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비대면
진료 요청의 확인, 비대면 진료
의 실시,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전달 등을 위하여 인
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이하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려는 자(이하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는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 제공

<신 설>

- •운영 기준을 따라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가 제공하는 기 능의 적정성 및 우수성에 대하 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할 수 있다.
- 제34조의4(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의무사항 등) ① 제34조의3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는 비대면 진료 중개대체를 제공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의료인의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는

 행위
 - 2.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 ·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 3. 「의료법」, 「약사법」,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
 하여 보건의료인, 의료기관,
 약국 및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하
 는 행위

- 4. 그 밖에 보건의료질서를 저 해하거나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
- ②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는 「약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 사주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1.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특정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 (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소개· 알선·유인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 ·약속하거나 의료기관등으로 부터 이를 받는 행위
- 2. 환자·환자보호자 또는 처방 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한 의 료기관, 약국 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 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환자 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의료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 저 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 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 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 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 • 제2항, 제38조제1 항 · 제2항, 제38조의2, 제41조 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 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 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 반한 때, 종합병원·상급종합병 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 제1항 • 제3조의4제1항 • 제3조 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 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 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 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 • 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u>기관등의 명칭·소재지 등을</u>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
외한다)
데63조(시정 명령 등) ①
제34조제2항, 제34조
<u> 의2제4항ㆍ제5항,</u>
진료 중개업자가 제34조의3제3
항 및 제34조의4를 위반한 때
<u> 또는</u>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 전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
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
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
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
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
라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
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
관에만 명할 수 있다.

- 1. ~ 4의3. (생 략)
- 5. 제33조제5항·제7항·제9항

 ·제10항, 제40조, 제40조의2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 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
 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의2. ~ 9.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세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
1. ~ 4의3. (현행과 같음)
5 <u>제</u>
<u>10항, 제34조의2제4항·제5항</u>
<u>.</u>
5의2.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신 설>

<신 설>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34조의3제2항에 따 른 신고를 한 경우
- 2. 제34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 정 지 처분을 받은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는 업무 정지기간 중 에 각각 비대면 진료 중개업을 하지 못한다.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 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 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 2. ~ 4. (생 략)

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4조제1항 • 제4항
· 88조(벌칙)
OO그(현 기)
1
<u>제33조제</u>
4항, 제34조의4
<u>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u>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u>다</u>)·제5항
•
2. ~ 4. (현행과 같음)